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1.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2003년도 사용계획 금 액	비 고
	전년도 이월액	기 금 전 입 금	이 자 수 입	기타 수입	계		
2003년도	178,855	200,000	18,926		397,781	-	

나. 검토의견

-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고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지원 육성하고자 2000년 12월 14일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000년부터 기금을 적립 조성하여 2003년도 순조성액은 397,781천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이는 2005년까지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1.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B)	순조성액 (A-B)	비 고
	전년도 이월액	재산임대 수 입	이 자 수 입	기타 수입	소계(A)			
2003년도	21,270	18,002	1,963		41,235	-	41,235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가로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임대료를 적립, 추후 내구연수가 지난 농기계를 교체하여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동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 2001년 제57회 제2차 정례회의시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 조례안”을 심사하여 2002년 1월 15일 조례로 제정된 것임.
- 2003년도 농축산과 예산안 461쪽에 농기계임대사업비(트랙터외 4종) 2억원을 편성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 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농번기철 이전에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해 줄 수 있도록 대상자선정 등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2003년도 농기계임대수입계획 금액이 18,002천원으로 금년 임대수입 금액 20,700천원보다 감액 편성한 것은 2003년도 농기계 구입비(트랙터외4종) 2억원에 대한 임대수입 금액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1. 파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2003년도 사용계획 금 액	비 고
	전년도 이월액	기 금 전 입 금	이 자 수 입	기타 수입	계		
2003년도	301,630	74,011	48,718		424,359	37,000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와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25일 조례로 제정되어 '99년부터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평균액의 1000분의 2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2003년도에 74,011천원을 출연하여 424,359천원의 기금을 조성 재난예방사업에 2003년도 기금 적립금의 50%에 해당하는 37,000천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을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등 설치목적에 운용·관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파주시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2003년도 사용계획 금 액	비 고
	전년도 이월액	기 금 전 입 금	이 자 수 입	기타 수입	계		
2003년도	543,242	296,046	18,675		857,963	177,628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을 위하여 1996년 11월 19일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가 제정되어 1997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운용·관리하고 있음.
- 동 기금의 2003년도 운용계획에 있어 지출액은 177,628천원으로 기금 조성액 857,963천원의 20.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방자제구입, 재해복구장비 임차료, 재해대책사업 등에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